

제안이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지원코자 함.

주요골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 추가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감면대상) 제1항제1호증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4 】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2. 9.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장 직급을 조정 명칭 변경하고자 함.

주요골자

- 직급조정 : “지방의무기좌 또는 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함.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의무기좌 또는 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5 】 제15회의회임시회의사일정

年月日時	次數	案 件	備 考
92.2.12 (금) 10 : 00	1	○ 개회식	○ 사회 : 의사계장 ○ 부군수, 각실과소장참석
		1. 제1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보고의건	○ 의장제의 ○ 군수 시정연설 ○ 보고 및 질의